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인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인권팀장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인권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5 1)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인권팀) ① (생략)	제11조의2(인권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u><단서 신설></u>	② ----- -----. <u>다만, 제주인권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28